성주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

1. 개정이유

「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」의 시행(2014.05.02.)과 함께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과 규격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군민에게 보다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의회기·의원배지 등의 무궁화 속 한자문양 “議”자를 “의회”로 변경(안 제3조)

○ 의회기의 규격을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(안 제4조)

○ 표지도형, 의회기 및 의원배지 제작 표준안을 반영한 규격 변경(별표1～별표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」,「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표준안」

나. 예산조치: 10,000천원(2016년 본예산 반영)

다. 기　　타

○ 개정 규칙안 : 붙임

4. 검토의견

○ 본 규칙 개정안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우리 문자인 한글 표기와 함께 각 시·군·자치구 의회별로 상이한 의회마크 도형과 규격, 그리고 글자체 등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규격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의회기·의원배지 등의 무궁화 속 한자문양 “議”자를 “의회”로 변경하고, 의회기의 규격을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,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표지도형과 의회기 및 의원배지 문양을 표준안에 맞게 규격을 변경한 것입니다.

○ 이미 국회에서도 국회기 및 국회배지의 한글화가 시행 중에 있고,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도내 각 시·군에서도 한글화를 시행(11개 시·군)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

검토결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고, 의회상징물 한글화 추진을 통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본 규칙을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